

# 서울디자인재단 교부금(품) 사용 동의서

1.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의 「기부금관리 및 운영 규정」, 「기부금관리 및 운영 규정 시행 내규」에 따르며, 기부금심의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단이 교부된 기부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지급된 교부금(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기부금수혜자는 재단의 결정에 따른다.
  - 가. 기부금(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나. 교부금(품)을 목적의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회계처리기준 미 준수 포함)
  - 다. 교부신청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 라. 교부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마. 재단의 관련서류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 바. 법령사항 등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 사. 기타 기부금심의운영위원회가 교부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3. 기부금심의운영위원회에 제출된 기부금 교부신청서 및 지원사업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 교부금(품)을 사용한다.
4. 재단이 교부금(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사업의 진행내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재단 담당자가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5. 기부금(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교부금(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부금심의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 교부금(품) 불법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기부금수혜자가 진다.
7. 교부금(품)의 정산에 관해서는 재단의 회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8. 교부금(품) 지원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회계정산보고 내용 포함)를 재단에 제출한다. 단, 재단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9. 지원사업 종료 후 교부금(품) 정산(납부 영수증 제출) 및 잔액 발생 시 반납은 재단이 정한 양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시행에 있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행 완료 후 교부금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모근 책임을 진다.

상기 내용의 교부금(품) 지원조건에 동의합니다.

2017 . 03 . 22 .

기부금수혜자: 서울디자인재단 패션워크팀 이하림 (인)

연락처 : 02-2088-3156

주 소 : 서울시 중구 산동동 25-7 유어스빌딩 4층 패션워크팀

(재)서울디자인재단 귀하

## (재)서울디자인재단 기부금 교부신청서

신청단체명 : 서울디자인재단 패션워크팀

기부단체명 : ㈜ 라인프렌즈

<지 원 사 업 소 요 경 비>

(단위 : 원)

총 소 요 액	기부금 신청액	기타 자원
50,000,000	현금	
	현물(장부가액)	50,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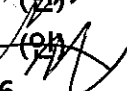
지원사업명 : 2017FW 서울패션워크 협찬

사업 개요 : 1) 2017FW 서울패션워크 행사 진행에 사용  
2) 서울패션워크 바이어 VIP GIFT로 사용

사업수행기간 : 2017 년 3 월 27 일 ~ 2017 년 4 월 1 일

(재)서울디자인재단 기부금관리 및 운영규정 제 7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조건부기부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03 월 22 일

교부 신청자(외부)	교부 신청자(내부)
<p>주 소 :</p> <p>성명(단체명): (인)</p> <p>대표자명 : (인)</p> <p>담당자명 :</p> <p>전화번호 :</p> <p>핸드폰 :</p> <p>E-mail :</p> <p>계좌번호 : ( )은행</p> <p>예금주명 :</p> <p style="text-align: right;">(통장사본 첨부)</p>	<p>신청부서 : 패션워크팀</p> <p>부서장명 : 김윤희 팀장 (인) </p> <p>담당자명 : 이하림 주임 (인) </p> <p>전화번호 : 02-2088-3156</p> <p>핸드폰 : 010-9143-4001</p> <p>E-mail : 2ha@seouldesign.or.kr</p>

### (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서식 : 기부심의운영위원회 심의자료 제출양식>

**(재)서울디자인재단 기부심의운영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기부 약정자) < (주) 라인프렌즈 >의 조건부기부건에 대한 (재)서울디자인재단 기부심의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 본 기부 건에 대한 채납의사를 확인합니다.
- 제출내용에는 허의사실이 없으며 본 기부금 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에 있어 그 내용에 추후 변경이 없을 것을 확인합니다.
- 본 기부 건과 관련하여 귀 재단의 기부금관리 및 운영 규정 제5조에 의거한 조건부 기부금에 대한 조정 지원 및 제7조에 의거한 처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7 년 03 월 22 일

**(재)서울디자인재단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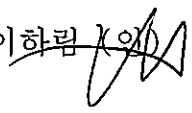
제출자	단체 인 경 우	단 체 명: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자명: 이 근 사업자등록번호: 120-82-09000 담당자명: 이하림 전화번호: 02-2088-3156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22 유어스빌딩 4층
	개 인 일 경 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사업명	(단체 운영 경비 지원일 경우 '단체 운영'으로 기재) 2017FW 서울패션위크	
사업개요	(기부자 지정 사업에 대한 개요 서술, 세부 사업계획 및 내용은 붙임양식 사용) *별도 첨부 (2017 서울패션위크 종합계획(안))	
예산개요	총소요액	본 기부금 이외 기타 재원
	50,000,000원	-

# 서울디자인재단 교부금(품) 사용 동의서

1.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의 「기부금관리 및 운영 규정」, 「기부금관리 및 운영 규정 시행 내규」에 따르며, 기부금심의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단이 교부된 기부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지급된 교부금(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기부금수혜자는 재단의 결정에 따른다.
  - 가. 기부금(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나. 교부금(품)을 목적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회계처리기준 미 준수 포함)
  - 다. 교부신청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 라. 교부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마. 재단의 관련서류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 바. 법령사항 등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 사. 기타 기부금심의운영위원회가 교부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3. 기부금심의운영위원회에 제출된 기부금 교부신청서 및 지원사업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 교부금(품)을 사용한다.
4. 재단이 교부금(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사업의 진행내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재단 담당자가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5. 기부금(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교부금(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부금심의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 교부금(품) 불법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기부금수혜자가 진다.
7. 교부금(품)의 정산에 관해서는 재단의 회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8. 교부금(품) 지원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회계정산보고 내용 포함)를 재단에 제출한다. 단, 재단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9. 지원사업 종료 후 교부금(품) 정산(납부 영수증 제출) 및 잔액 발생 시 반납은 재단이 정한 양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시행에 있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행 완료 후 교부금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모근 책임을 진다.

상기 내용의 교부금(품) 지원조건에 동의합니다.

2017 . 03 . 22 .

기부금수혜자: 서울디자인재단 패션워크팀 이하림 

연락처 : 02-2088-3156

주 소 : 서울시중구산동251-7 유어스빌딩 4층 패션워크팀

(재)서울디자인재단 귀하

## (재)서울디자인재단 기부금 교부신청서

신청단체명 : 서울디자인재단 패션워크팀

기부단체명 : (주) 할리스 에프랜비

<지 원 사 업 소 요 경 비>

(단위 : 원)

총 소 요 액	기부금 신청액	기타 재원
26,772,000	현금	
	현물(장부가액)	26,772,000원

지원사업명 : 2017FW 서울패션워크 협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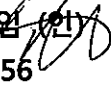
사업 개요 : 1) 2017FW 서울패션워크 행사 진행에 사용

2) 서울패션워크 프레스룸 & 바이어룸 운영에 사용

사업수행기간 : 2017 년 3 월 27 일 ~ 2017 년 4 월 1 일

(재)서울디자인재단 기부금관리 및 운영규정 제 7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조건부기부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03 월 22 일

교부 신청자(외부)	교부 신청자(내부)
<p>주 소 :</p> <p>성명(단체명): (인)</p> <p>대표자명 : (인)</p> <p>담당자명 :</p> <p>전화번호 :</p> <p>핸드폰 :</p> <p>E-mail :</p> <p>계좌번호 : ( )은행</p> <p>예금주명 :</p> <p style="text-align: center;">(통장사본 첨부)</p>	<p>신청부서 : 패션워크팀</p> <p>부서장명 : 김윤희 팀장 (인) </p> <p>담당자명 : 이하림 주임 (인) </p> <p>전화번호 : 02-2088-3156</p> <p>핸드폰 : 010-9143-4001</p> <p>E-mail : 2ha@seouldesign.or.kr</p>

### (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서식 : 기부심의운영위원회 심의자료 제출양식>

## (재)서울디자인재단 기부심의운영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기부 약정자) < (주) 할리스 에프앤비 >의 조건부기부건에 대한 (재)서울디자인재단 기부심의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 본 기부 건에 대한 채납의사를 확인합니다.
- 제출내용에는 허의사실이 없으며 본 기부금 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에 있어 그 내용에 추후 변경이 없을 것을 확인합니다.
- 본 기부 건과 관련하여 귀 재단의 기부금관리 및 운영 규정 제5조에 의거한 조건부 기부금에 대한 조정 지원 및 제7조에 의거한 처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7 년 03 월 22 일

## (재)서울디자인재단 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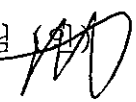
<b>제출자</b>	단체 인 경 우	단 체 명: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자명: 이 근 사업자등록번호: 120-82-09000 담당자명: 이하림 전화번호: 02-2088-3156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22 유어스빌딩 4층
	개 인 일 경 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b>사업명</b>	(단체 운영 경비 지원일 경우 '단체 운영'으로 기재) 2017FW 서울패션워크	
<b>사업개요</b>	(기부자 지정 사업에 대한 개요 서술, 세부 사업계획 및 내용은 붙임양식 사용) *별도 첨부 (2017 서울패션워크 종합계획(안))	
<b>예산개요</b>	<b>총소요액</b>	<b>본 기부금 이외 기타 재원</b>
	26,772,000원	-

# 서울디자인재단 교부금(품) 사용 동의서

1.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의 「기부금관리 및 운영 규정」, 「기부금관리 및 운영 규정 시행 내규」에 따르며, 기부금심의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단이 교부된 기부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지급된 교부금(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기부금수혜자는 재단의 결정에 따른다.
  - 가. 기부금(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나. 교부금(품)을 목적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회계처리기준 미 준수 포함)
  - 다. 교부신청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 라. 교부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마. 재단의 관련서류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 바. 법령사항 등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 사. 기타 기부금심의운영위원회가 교부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3. 기부금심의운영위원회에 제출된 기부금 교부신청서 및 지원사업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 교부금(품)을 사용한다.
4. 재단이 교부금(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사업의 진행내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재단 담당자가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5. 기부금(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교부금(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부금심의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 교부금(품) 불법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기부금수혜자가 진다.
7. 교부금(품)의 정산에 관해서는 재단의 회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8. 교부금(품) 지원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회계정산보고 내용 포함)를 재단에 제출한다. 단, 재단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9. 지원사업 종료 후 교부금(품) 정산(납부 영수증 제출) 및 잔액 발생 시 반납은 재단이 정한 양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시행에 있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행 완료 후 교부금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모근 책임을 진다.

상기 내용의 교부금(품) 지원조건에 동의합니다.

2017 . 03 . 22 .

기부금수혜자: 서울디자인재단 패션워크팀 이하림 

연락처 : 02-2088-3156

주 소 : 서울시중구산방동 251-7 유어스빌딩 4층 패션워크팀

(재)서울디자인재단 귀하

## (재)서울디자인재단 기부금 교부신청서

신청단체명 : 서울디자인재단 패션위크팀

기부단체명 : 에델만퍼블릭릴레이션스월드와이드코리아

<지 원 사 업 소 요 경 비>

(단위 : 원)

총 소 요 액	기부금 신청액	기타 자원
30,000,000	현금	
	현물(장부가액)	30,000,000원

지원사업명 : 2017FW 서울패션위크 협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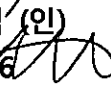
사업 개요 : 1) 2017FW 서울패션위크 행사 진행에 사용

2) 서울패션위크 프레스룸 & 바이어룸 운영에 사용

사업수행기간 : 2017 년 3 월 27 일 ~ 2017 년 4 월 1 일

(재)서울디자인재단 기부금관리 및 운영규정 제 7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조건부기부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03 월 22 일

교부 신청자(외부)	교부 신청자(내부)
<p>주 소 :</p> <p>성명(단체명): (인)</p> <p>대표자명 : (인)</p> <p>담당자명 :</p> <p>전화번호 :</p> <p>핸드폰 :</p> <p>E-mail :</p> <p>계좌번호 : ( )은행</p> <p>예금주명 :</p> <p style="text-align: center;">(통장사본 첨부)</p>	<p>신청부서 : 패션위크팀</p> <p>부서장명 : 김윤희 팀장 (인) </p> <p>담당자명 : 이하림 주임 (인) </p> <p>전화번호 : 02-2088-3156</p> <p>핸드폰 : 010-9143-4001</p> <p>E-mail : 2ha@seouldesign.or.kr</p>

### (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서식 : 기부심의운영위원회 심의자료 제출양식>

**(재)서울디자인재단 기부심의운영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기부 약정자) < 에델만퍼블릭릴레이션스월드와이드코리아 >의 조건부기부건에 대한 (재)서울디자인재단 기부심의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 본 기부 건에 대한 체납의사를 확인합니다.
- 제출내용에는 허의사실이 없으며 본 기부금 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에 있어 그 내용에 추후 변경이 없을 것을 확인합니다.
- 본 기부 건과 관련하여 귀 재단의 기부금관리 및 운영 규정 제5조에 의거한 조건부 기부금에 대한 조정 지원 및 제7조에 의거한 처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7 년 03 월 22 일

**(재)서울디자인재단 귀중**

<b>제출자</b>	단체 인 경 우	단 체 명: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자명: 이 근 사업자등록번호: 120-82-09000 담당자명: 이하림 전화번호: 02-2088-3156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22 유어스빌딩 4층	
	개 인 일 경 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b>사업명</b>	(단체 운영 경비 지원일 경우 '단체 운영'으로 기재) 2017FW 서울패션위크		
<b>사업개요</b>	(기부자 지정 사업에 대한 개요 서술, 세부 사업계획 및 내용은 붙임양식 사용) *별도 첨부 (2017 서울패션위크 종합계획(안))		
<b>예산개요</b>	<b>총소요액</b>		<b>본 기부금 이외 기타 재원</b>
	30,000,000원		-